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교육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제2조관련)

구 분	직 위	등 급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	나등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1부교육감	가등급
	제2부교육감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	나등급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나등급
	제2부교육감	나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	나등급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나등급